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6
----------	-----

제출년월일 : '96 . 10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 이유

현 주차장 조례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및 급지구분의 불명확한점을 명확하게 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의 불합리한점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므로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수탁대행료 납부방법이 수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있어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함.

□. 주요 골자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안산시에 연고가 있는자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6조)
- 관리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위탁대행료의 3개월 단위 선납조건을 1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하므로서 주차서비스제고와 수탁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안제6조)
- 획일적 산출방식(면적 × 공시지가 × 요율)에 의하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다양한 종류의 주차장 건설에 대비하고 주차장의 유형별 수익요율등에 따라 산출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상, 노외주차장, 지하, 조립식주차장, 주차빌딩, 환승주차장 등으로 세분적용 할 수있도록 하였음.(안제6조)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을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으로 하여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안제8조)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중 도심은 1급지 기타 지역은 2급지로 분류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급지구분을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1급지를 노상.노외주차장 2급지를 환승(역세권)주차장으로 하되 다만, 1급지중 반월동,대부동,안산동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임을 감안 2급지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제3조)
- 현행 노상,노외주차장으로 구분된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차수요와 이용시간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주차장 운영시간을 상업지역, 업무지역, 주거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함.(안제3조)

□. 참고사항

- 근거방법 :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14,15조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항 제2호 및 제2항중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신설한다.

- 2.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1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또는 능력이 있는자

② "서 식"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	1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시에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frac{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

2.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당해(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frac{25}{1000}$ × 기간(년) × 지수

3. 환승주차장 : 1 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당해(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frac{25}{1000}$ × 지수

$$\text{※ 지 수} = \frac{\text{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text{1 급지 1 회 주차요금 (30분기준)}}$$

④ 제3항에 의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토지의 지적공부상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8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1"중 2와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 급지 :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 다만, 반월.대부.안산동 소재 주차장은 2급지를 적용한다.

나. 2 급지 : 환승(역세권)주차장

6.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중

업무기능 담당지역 : 09:00~19:00(토요일 09:00~14:00)

○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중 업무기능 담당지역 제외)

준주거지역 : 09:00~23:0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조례개정 이전에 위탁관리 계약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제6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 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제8조 제2항 및 법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법인 2. <u>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u>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1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자</u> <p>② 현행과 같음</p>

신 구조 문 대비 표

현				개 정 안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금액	납부방법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단위로 선납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	1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개월 단위로 선납
(신 설)				③ 제2항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당해토지(또는인근토지)의 $\frac{25}{1000} \times \text{점용기간(년)} \times \text{지수}$ 2.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주차장 : 1 대당 주차구획면적 $\times \text{면수} \times \text{당해(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times \frac{25}{1000}$ $\times \text{기간(년)} \times \text{지수}$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u>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3. 환승주차장 : 1 대당 주차구획면적(m²)×면수×당해(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 $\frac{25}{1000}$ × 지수</p> <p style="text-align: center;">※ 지수 = $\frac{\text{각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text{1급지 1회주차요금(30분기준)}}$</p> <p>④ <u>제3항에 의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에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로 적용한다.</u></p> <p>제8조(노상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u>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u> ----- ----- -----</p>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p> <table border="1" data-bbox="182 564 880 768"> <thead> <tr> <th>급 지구 분</th> <th>1 회 주 차 요 금 (1구획당 30분마다)</th> </tr> </thead> <tbody> <tr> <td>1 급 지</td> <td>500 원</td> </tr> <tr> <td>2 급 지</td> <td>300 원</td> </tr> </tbody> </table> <p>1. 이 주차요금표는 법제7조제1항 및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p> <p>2. 급지구분은 당해지역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으나 도심은 1급지로 하며, 기타지역은 2급지로 한다.</p>		급 지구 분	1 회 주 차 요 금 (1구획당 30분마다)	1 급 지	500 원	2 급 지	300 원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p> <p>" 현행과 같음 "</p> <p>1. 현행과 같음</p> <p>2.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1 급지 :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p> <p>※ 다만, 반월.대부.안산동 소재 주차장은 2급지를 적용한다.</p> <p>나. 2 급지 : 환승(역세권)주차장</p>	
급 지구 분	1 회 주 차 요 금 (1구획당 30분마다)								
1 급 지	500 원								
2 급 지	300 원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3. 주차요금은 안산시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중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있다.</p>	<p>3. 현행과 같음</p>
<p>4. 자가용10부제 운행참여 스티커 부착차량은 공영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5.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6. <u>주간시간의 범위는 09:00 ~ 23:00까지로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u></p>	<p>6. <u>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u> ○ <u>일반 및 전용 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중 업무기능 담당지역 : 09:00~19:00(토요일 09:00~14:00)</u></p>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p>7. 주차장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정한다.</p> <p>8. 30분 기준요금은 10분미만 경과까지 적용한다. (40분미만까지 30분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p> <p>9. 공휴일 및 일요일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p>	<p>○ <u>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중 업무기능 담당지역제외)</u> <u>준주거지역 : 09:00~23:00</u></p> <p>7. 현행과 같음</p> <p>8. 현행과 같음</p> <p>9. 현행과 같음</p>